

# 논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·운영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제24호	제 출 자	조배식 의원 외 2명
제 출 일	2022. 3. 16.	회부연월일	2022. 3. 16.

## 1. 제안이유

- 논산시 농촌마을과 농촌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·운영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조건, 위원회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부터 제17조)
- 다.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8조, 제29조)
- 라. 시설물의 관리·운영 및 위탁·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34조, 제36조, 제37조)

## 3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사업 완료된 시설물 이용을 통해 농촌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 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
- 지방자치법 제28조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, 제38조의2, 제39조, 농어촌정비법 제52조, 제58조, 제59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